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건강관리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년월일 : 2023년 11월 2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치매안심센터’)이 조문에 따라 상이하여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안 제1조)

- 「치매관리법」 개정(시행 2018. 12. 13.) :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전문개정
- 안 제1조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통일

나. 법령 현행화를 위하여 종전의 「지역보건법」 제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조례 개정 당시(2015. 9. 30.),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의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는 연관이 없어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을 포괄하는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로 변경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3조(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제9조(준용)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4) 법제심사 결과 : 검토의견 반영

구 분	검토 의견	반영여부	반영내용
법제심사	○ 기존의 제3조제6호의3 인용문구 수정 - 법 → 「치매관리법」 ○ 제3조 각 호 번호 수정 -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반영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li> <li>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li> <li>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li> <li>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li> <li>5. 치매조기검진</li> <li>6. 치매 지역사회 자원 강화 업무</li> <li>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 ----- ----- <u>치매안심센터</u>----- ----- -----.</p> <p>제3조(업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li> <li>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li> <li>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li> <li>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li> <li>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li> <li>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li> <li>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li> <li>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li> <li>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li> <li>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  
관리법」, 「지역보건법」, 「서  
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